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3-61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3년 1월 2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기존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 재계약 횟수를 제한(2회)하여 위탁시설의 사유화 논란을 해소하고 관행적인 재계약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및 혁신의지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, 신규법인 진입기회 제공

2. 주요내용

-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
-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
-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갱신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2회까지로 제한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주민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 120-1)
- 전화 : 3396-5305, FAX:3396-4337 ○ 메일 : joori0912@junggu.seoul.kr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주민복지과(☎3396- 530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차례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,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 조 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탁기간) <u>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	<p>제5조(위탁기간) <u>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두차례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,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한다.</u></p>